

의안번호	2207652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5. 1. 21.
추계번호	25F03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4조 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한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규모별 기본공제율 상향 － 일반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: 중소기업 12%, 중견기업 7%, 대기업 3% －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: 중소기업 18%, 중견기업 10%, 대기업 6%
2	안 제30조의3 제5항 제3호 (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여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과세연도에 과세특례를 적용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 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0조의3 제5항 제3호 (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개정안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기지역의 사업장에서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 시설과 그 외 사업용투자자산 등에 대하여 투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규모별로 3~18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
[표 1] 위기지역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(안)

(단위: %)

구분	기본공제금액						추가
	대		중견		중소		
	현행	산업위기 ¹⁾	현행	산업위기	현행	산업위기	
일반	1	3	5	7	10	12	10
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	3	6	6	10	12	18	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	15	—	15	—	25	—	

주 : 1)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사업장이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

- 개정안은 제30조의3 제5항제3호에서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위기지역 내 고용유지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이 존재하고, 지정 공고된 지역 구분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2025년 1월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음
 - － 과거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적용되고, 전북 군산 및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지정기간 5년으로 추가 연장 불가
 - －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

[표 2] 위기지역 등 지정공고 연혁

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				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¹⁾			
공고	지역	기간	비고	공고	지역	기간	비고
제2022-904호	경북 포항	2022.10.31.~2024.10.30.	2년 ³⁾	제2022-388호	전북 군산	2022.4.5.~2023.4.4.	1년
				제2021-442호	울산 동구 등	2021.5.29.~2023.5.28.	2년 연장 ²⁾
				제2020-173호	전북 군산	2020.4.5.~2022.4.4.	2년 연장
				제2019-271호	울산 동구 등	2019.5.29.~2021.5.28.	2년 연장
				제2018-336호	울산 동구 등	2018.5.29.~2019.5.28.	1년
				제2018-204호	전북 군산	2018.4.5.~2020.4.4.	2년

주: 1)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[시행 2022.2.18.] [법률 제18408호, 2021.8.17.]

부칙 제3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

2)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, 전체 지정기간 5년 이하

3)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2년

-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3 과세연도만 발생하였으며,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경우 2021 및 2023 과세연도 발생

-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.1.1. 시행된 이후 2022 과세연도까지 실적이 없고, 2023 과세연도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25.9억 원, 중소기업 외 12.1억 원, 일반 사업용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3,979.8억 원, 중소기업 외 6,351.9억 원 발생
- 고용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중소기업 외 법인세 세액공제는 2021 과세연도 0.6억 원, 2023 과세연도 1억 원 발생

[표 3] 연도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

(단위: 억 원)

		2023년		2022년		2021년		2020년		2019년	
세액공제 항목		중소	일반 ¹⁾	중소	일반	중소	일반	중소	일반	중소	일반
통합 투자	일반	3,979.8	6,351.9	-	-	-	-	-	-	-	-
	신성장·원천	25.9	12.1	-	-	-	-	-	-	-	-
고용유지중소기업		2.2	1.0	1.1	0	0.8	0.6	1.0	0	-	-

주: 1)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

자료: 국세통계포털, 「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」, 각 연도

- 국세청 확인 결과, 연도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자료는 법인소재지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제공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에 대한 시·군·구 기초단체별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수인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수인	02-6788-4839	suin2025@assembly.go.kr